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791 / 전송 731-6795

문서번호 주계 58533 - 696

시행일자 1994. 3. 16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주	택 국 장			전 결
주	택 개 량 과 장			
개	량 2 계 장			
기	안			박 훈 희



제목 용산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및 고시

원본대조필

1. 건설부고시 제1991-175호('91. 4. 9)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11호('93. 4.16)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우리시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합리한 공공시설(도로)계획의 변경(폐지)요청이 있어 내용검토한바, 공공시설(도로 : B=2M, L=34.6M) 변경(폐지)을 요하는 것으로서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변경수립하여 같은법 제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안)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도서 1부

3. 개선계획변경결정 요청공문 1부. 끝.

(제2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제 의뢰

1. 우리시 관내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 하였기 아래와 같이 관보게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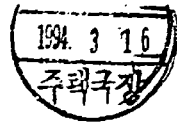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다. 법규근거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

첨부 고시문 사본 2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개발과장

제목 개선계획변경수립 보고

1. 건설부고시 제1991-175호('91. 4. 9)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1호('93. 4.16)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우리시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변경수립 고시하였기 그 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

원본제조필

첨부 1. 고시문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도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4안)

수신 용산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및 고시 통보

1. 주택 58533 - 335('94. 2.12)호와 관련임.

2. 위대호로 요청한 용산1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에 대하여 귀구 의견과 같이 개선 계획변경수립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를 도시정비과와 지적과 및 토목과에 통보 하여 도시계획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지구내 주민들에게 변경내용을 전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도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5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및 고시 통보

1. 우리시 관내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을 변경수립 및 고시 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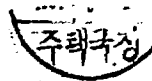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도서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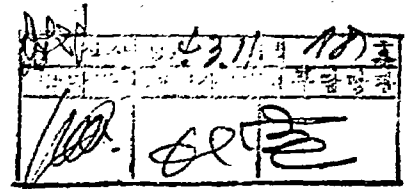
주 택 개 량 과 장

수신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인 본 대 조 팔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 85 호



고 시 (안)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1. 건설부고시 제1991-175호('91. 4. 9)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11호 ('93. 4. 16)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우리시 용산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제2항에 의거 주거 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 같은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용산구 도시정비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본대조필**

1994. 2.

서울특별시장

가. 개선계획수립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구명	위 치	면적(m ²)	시행방법
용산1	용산구 용산2가동 1번지일대	18,926	현지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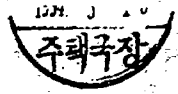
나. 사업시행기간 : 1991. 1. 1. ~ 1994.12.31.

다. 사업 시행자 : 용산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계	18,926	100.0		
주 거 용 지	기정	14,056.6	74.3	
	변경	14,125.6	74.6	
도 로	기정	4,828.5	25.4	도로폐지
	변경	4,759.5	25.2	b=2m, l=34.5m
공 증 변 소	40.9	0.2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사 용 형 태	기 능	연장 (M)	면 적 (m ²)	기 점	종 점
기 정	소로	2	1	8	일반도로	국지도로	187	1,496	1-1130	1-457
"	"	3	1	6	"	"	110	660	1-1486	1-740
"	"	3	2	6	"	"	62	372	1-351	1-457
"	"	3	3	6	"	"	75	450	1-321	1-457
"	"	3	4	4	"	"	126	504	1-1330	1-17
"	"	3	5	4	"	"	70	280	1-336	1-1386
"	"	3	6	4	"	"	62	248	1-330	1-234
"	"	3	7	4	"	"	25.5	102	1-173	1-232
"	"	3	8	4	"	"	45	180	1-186	1-1414
"	"	3	9	4	"	"	45.5	182	1-137	1-580
"	"	3	10	4	"	"	33	132	1-594	1-590
"	"	3	11	4	"	"	43	172	1-567	1-575
"	"	3	12	4	"	"	29	116	1-557	1-559
"	"	2	13	4	"	"	131	524	1-638	1-457
기 정	"	3	14	2	"	"	34.5	69	1-611	1-601
폐 지	"	3	14	2	"	"	34.5	69	1-611	1-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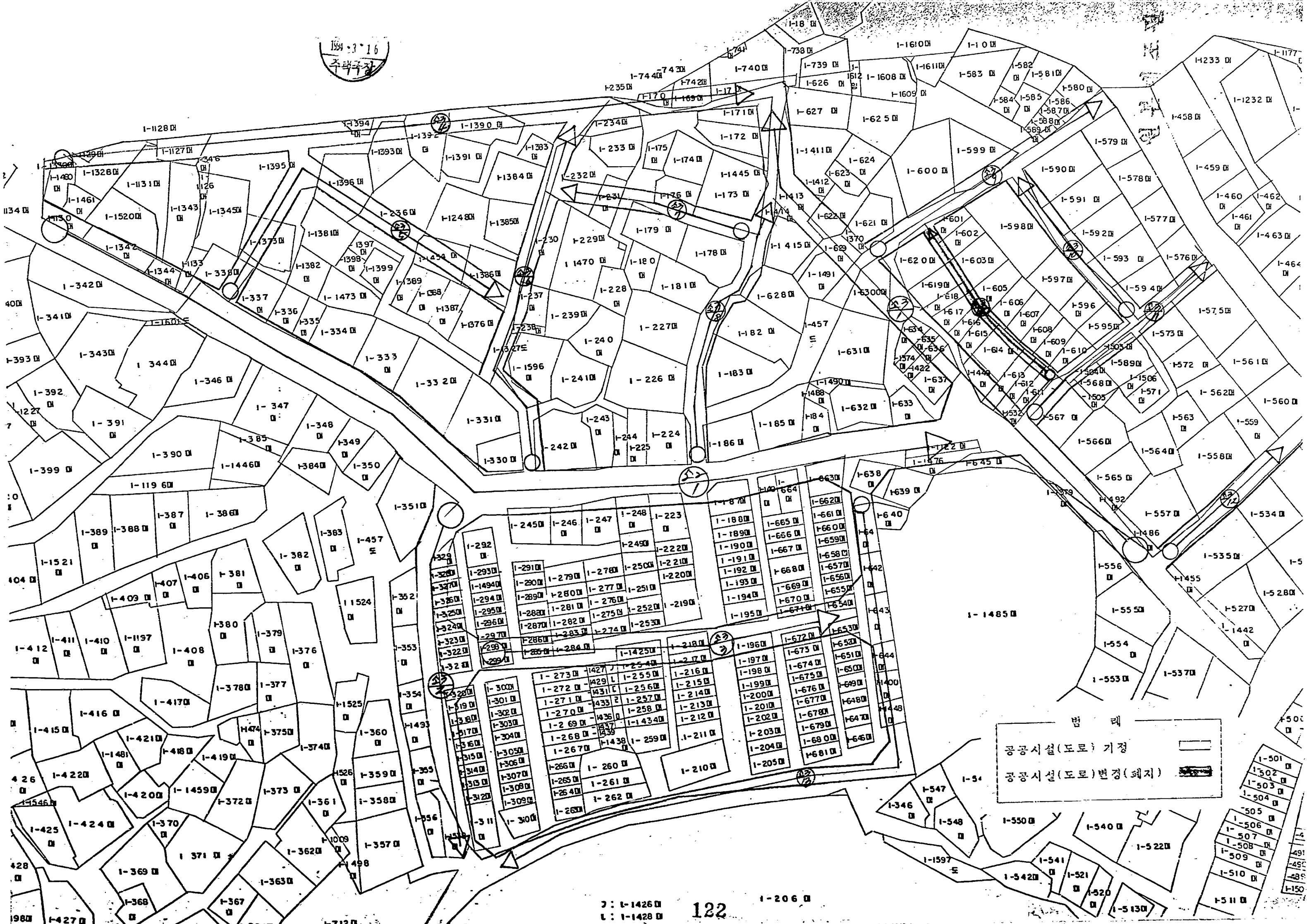
3) 건축물의 개량계획 : 변경없음.

원본대조필

마. 개선계획변경사유 : 공공시설(도로)의 일부폐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

바.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용산구 도시정비국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는도시와 같음.

1994. 3. 16
주권지



범례
공공시설(도로) 기정
공공시설(도로) 변경(폐지)